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400호 2022년 7월 25일(월)

공 고

- 속초시 금고 지정 공고 2

입법예고

- 속초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

속초시 금고 지정 공고

속초시 금고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시금고지정심의 위원회의 심의결과 속초시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이 아래 와 같이 지정되었기에 속초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금고지정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속초시지부
- 금고의수 : 단일금고(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약정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4년)

2022 년 7 월 25 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25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속초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0조와 관련하여, 별표 4의 가변성 있는 (예시) 이미지를 삭제하여 규칙을 재정비함으로써 속초시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별표 4의 (예시) 이미지 삭제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8. 14.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회계과 공용차량T/F팀
- 연락처 : 전화(033-639-2455), 팩스(033-639-2698),
전자문서(js950316@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회계과 공용차량T/F팀(033-639-24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규칙 제 호

속초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